

# 예산총칙

2024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23,157,324	18,694,720
일반회계	537,766,732	16,133,002
특별회계	85,390,592	2,561,718
기타특별회계	85,390,592	2,561,718
상수도특별회계	19,318,451	579,554
청사건립특별회계	422,579	12,677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49,582	22,487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97,000	5,910
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	64,702,980	1,941,08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없다"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6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